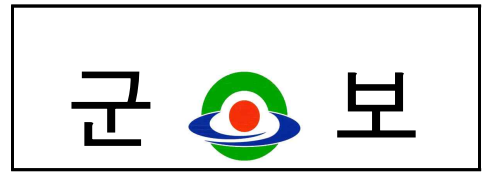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70호 2023. 9. 11.(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23-1189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전화 650-6065)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과 운행 범위 변경(안 제5조)

- 운행 시간 : 연중 9:00부터 18:00까지→연중무휴 24시간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및 충청북도 단양군으로 확대

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운영 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 수행 업무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및 자격 확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영관리, 특별교통수단 운행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간행물 발간 및 보급,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지원 및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등

다. 이동지원센터 위탁 대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공공기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단체,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가능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lsm9308@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3) 팩스 : 054-650-63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설교통과(전화 : 054-650-62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1
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출발지 예천을 기준으로
대구경북”을 “대구광역시·경상북도”로, “한다”를 “하며, 인접지역인 충청북
도 단양군도 포함한다”로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차량의 대수는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 확인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영관리
4. 특별교통수단 운행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

7.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 등에는 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전의 제7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3.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제8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운영관리)”를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제3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 ----- ----- ----- -----.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 ③ (생략) ④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1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군수(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가 운행수요를 고려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출발지 예천을 기준으로 대구경북 전 지역으로 한다.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차량의 대수는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⑤ ----- 대 구광역시·경상북도 ----- ----- 하며, 인접지역인 충청북도 단양군도 포함한다.
제6조(이용요금) ① · ② (생략)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제7		제6조(이용요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8조--		

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
탁기관을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
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등
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대
한 자격 확인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특별교통수단 운행자 및 관련
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
행물의 발간 및 보급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
원

7.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
한 통계 관리

8.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야간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 등에는 이용 상황에 따라

제7조(운영관리)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 ④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2. (생략)
3. 수탁자가 제8조 규정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4. 5. (생략)

제10조·제11조 (생략)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3.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0조(위탁의 해지) -----

-----.

1. 2. (현행과 같음)
3. ----- 제9조 -----

4. 5. (현행과 같음)

제11조·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